

##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장애인 인권 침해 점검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비밀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 인권침해 점검 시설 대상을 확대함 (안 제6조)
  -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
- 비밀준수 조항 신설 (안 제8조)

4.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48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을 “복지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범죄피해”를 “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사실”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거주시설”을 각각 “복지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시 군수”를 “때에는 군수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·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사실 확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제6조(시설 점검 등)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복지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설 점검 등) ① ----- -----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사실 ----- ----- ----- 복지시설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복지시설 ----- ----- ----- ----- 때에는 군수----- -----.</p> <p>제8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·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사실 확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</p>

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□ 장애인복지법**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7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④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

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·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30.]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1. 3. 30., 2020. 12. 29.>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

②(생략)

제62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9. 1. 15.>

1.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·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때
3.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
4.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,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
5.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
6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3. 30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2. 8.>

제85조(권한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>

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. 26.]